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6월 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0년 6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0. 6. 15) 상정
- 제1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0. 6. 15)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세정과장 도 욱)

가. 제안이유

○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2009. 11. 1.부터 본격 시행 중인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시 된 행정안전부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표준안」을 본 조례에 반 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 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 규정함(안 제3조제1항제6호 신설)
-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부과한 경우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를 지급하던 것을 2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하고, 지급 기준을 100분의 10으로 변경 규정함(안 제4조제1항제5호)
-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은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 촉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함(안 제4조제1항제8호 신설)

3. 질의 및 답변요지

○ 특이사항 없음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 음
-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제4조제1항제5호 중 "1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하고,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금의 100분의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번	안 호	제594호
의	결	2010. 6. 18
년 _윝	일일	(제161회)

제출년월일: 2010. 6. 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지방세 체납차량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2009. 11. 1.부터 본격 시행 중인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시된 행정안전부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표준안」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 규정함(안 제3조제1항제6호 신설).
- 나.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부과한 경우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던 것을 2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하고, 지급 기준을 100분의 10으로 변경 규정함(안 제4조제1항제5호).
- 다.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은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함(안 제4조제1항제8호 신설).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제4조제1항제5호 중 "1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하고,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금의 100분의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제3조(지급대상) ① (생 략) 1. ~ 5. (생 략) < 신 설> ② ~ ④ (생 략) 제4조(지급기준) ① (생 략) 1. ~ 4. (생 략)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을 포함한다)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 7. (생 략) <신 설>	제3조(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8.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징수촉 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법

제56조(징수촉탁) ①이 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의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에 관한 사무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2. 체납처분비
-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